방사능 모염 선박평형수 유입 차단 조치 안내

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('23.8.24.)에 따라 방사능 오염 선박평형수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를 시행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

일본 동부 6개현* 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입항 예정인 선박

- * 아오모리현, 이와테현, 후쿠시마현, 미야기현, 이바라기현, 치바현
- 조치사항 국내 입항 24시간 전까지 평형수 입항보고서* 제출
 - * 평형수 주입·교환·배출 등 평형수관리에 관한 사항 기재
- (출) 평형수입항보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평형수관리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「선박평형수 관리법」에 따라 항해정지(출항금지)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2

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예정인 선박

- 조치사항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* 에서 평형수 교환 후 입항
 - * 쓰가루해협 등 일본 북쪽항로로 입항시 쓰가루해협 통과 후 부터 동경 135도30분 사이 또는 간몬해협 등 일본 남쪽항로로 입항시 북위 34도35분 통과 후 부터 동경 132도30분 사이에서 교환
- (국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승선하여 교환 여부를 확인하고, 평형수 시료를 채취하여 신속하게 방사능 농도를 측정할 예정이며, 평형수 배출은 방사능 오염 조사 후 가능
- 3

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계획이 없는 선박

- 조치사항 출항 1시간 전까지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* 제출
 - * (제출서류/방법)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, 항해일지,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운전기록, 평형수 탱크 용량(사진) 등의 입증 자료를 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
- ()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출항 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미배출 여부를 확인 (필요시 승선조사)할 예정이며, 선박의 출항은 배출 여부 확인 후 가능

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조사 등 절차

